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4. 17.

사건번호 2017년 형제 호, 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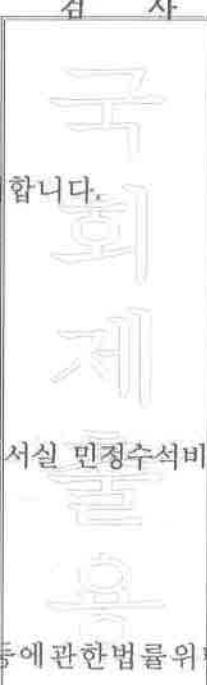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우 (

직업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특별감찰관법위반, 강요,
직권남용·권력행사방해, 직무유기

적용법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제123조, 제122조,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II.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2014. 5. 부터 2015. 1. 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비서관, 2015. 1. 부터 2016. 10. 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으로 각 근무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그 산하의 민정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이하 '특별감찰반'),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이하 '업무분장표')]상 민정비서관 소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업무분장표상 특별감찰반 소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정책자문위원 적격 심사,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업무분장표상 공직기강비서관 소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법률보좌,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권력기관의 제도개혁 관련 업무, 사법정책 기획 및 조정,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서실 내부규정 사전 검토, 심사(업무분장표상 법무비서관 소관),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정책 지원, 민원·제안·제도개선의 기획 및 조정, 행정심판제도 지원, 일반민원 처리, 현장방문 민원 처리(업무분장표상 민원비서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및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 쿠터 2016. 10. 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 등의 비위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직접 감찰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대상 공직자가 속한 부·처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비위 정보를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이첩하였고, 각 부·처 장관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보받거나 비위 정보를 이첩 받아 그에 따른 자체 감찰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감찰 결과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민정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파견 등 임용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소속 부·처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특히 전보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보직기간 전에 전보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이 필요해 장관이라도 임의로 전보를 할 수 없으므로, 민정수석이 부·처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법령상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전보, 파견 등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개명 전 '최 ')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김에게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인 박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김은 2016. 2. 말경 '박은 대 출신으로 프랑스 장식미술전에 책임이 있고, 김은 '대 출신으로 김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윤은 호남 출신이다, 박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다, 강운영지원과장은 김장관과 동향이고, 최장관정책보좌관이 두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최의 조카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장은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실 소속 윤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위 윤은 이를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 대통령은 2016. 3.경 피고인에게 위 박김, 윤장, 최을 비롯하여 이김, 임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4.경 특별감찰반을 통해 문체부 소속 박문화기반정책책관, 김저작권정책관, 이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이상 각 국장급), 윤재정담당관, 강운영지원과장, 김박물관정책과장(이상 각 과장급)을 비롯한 위 8명에 대하여 단순히 주변 공무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정도에 불과한 세평 수집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위 박, 김, 이, 윤, 강, 김에 대하여 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지 불과 한 달 후 2급으로 승진한 사례(이, 2급, 창조경제), ② 4급에서 단기간에 2급 승진을 시도하였다가 문체부 내부의 인사 라인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윤), ③ 교육 기간을 마치고 바로 중요부서로 배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문체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복지부동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교육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중요부서 국장으로 복귀한 사례(빅 본부정책관, 2급), ④ 관광정책관 재임시절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실패에 대하여 제2차관이 경질을 건의하였음에도 본부의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김 저작권 정책관, 2급), ⑤ 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김 ⑥ 문체부 산하 기관인 대한레저스포츠협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문체부 감사과장에게 청탁하여 환수하여야 할 2억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환수되도록 한 협의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김 운영지원과장)'라는 세평과 함께 위 6명은 당시 문체부 장관 김 및 문체부 제1차관 박 측 사람들로서 김 제2차관이 싫어하거나 김 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보고 받았다.

한편 이와 같은 세평 수집 결과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거나, 빠른 승진을 시도했다거나, 복지부동이라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고, 정책수행 실패라는 사유 또한 정식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강 의 경우 비위의혹이 있다면 정식으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뿐, 결국 이러한 각 사유 및 근거만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 등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에게 법령상 정해져 있는 인사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더구나 문체부 정기 인사(통상 2월에 이루어지며, 2016년도에는 2월 일자로 단행) 이후 열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전보, 파견복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평 수집 결과만으로는 정기 인사시기도 아닌 시점에 이들을 좌천시킬 명분이 없자, 그 중 강 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마치 이들 모두에게 비위 협의가 있는 것처럼

문체부 장관을 압박하여 이들을 인사조치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민정비서관 윤 을 통해 당시 문체부 제1차관
인 정 :에게 연락하여 '박 , 김 , 이 등 국장 3명과 윤 , 강
김 등 과장 3명에 대한 전보조치가 필요하다, 강 과장은 업무상 비위로 감
사가 진행 중이므로 운영지원과장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고, 나머지 국·과장들도 나
름대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나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윗선에 보고가 된 사항
이다, 이들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 미래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벨트 부단장으로 파
견나가 있는 이 국장도 파견 복귀시켜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라'라고 요구하고, 계
속하여 정 :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문체부 장관 김 : 이 그 이유에 대해 묻
자, '뭘 알고 싶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강 과장에게는 비위가 있다'라고 말
하고, 위 김 :으로부터 그 종 강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
청받자, '그냥 인사조치를 하면 끝나지만 문서로 보내면 징계와 인사조치를 모두 해
야 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위 김 :으로부터 정기인사한지 3
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 다음 번 인사 때 한꺼번에 조치하면 안 되겠냐고 문의를 받
자, '이미 보고가 다 된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 은 2016.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어 정식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거나 징계사유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위 6명중 김 , 김 , 강
의 경우 전보 조치에 필요한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도 않아 사실상 전보 조
치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6. 5. 박 [] 을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김 [] 을 소속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장으로, 윤 [] 을 인문정신문화과장으로, 2016. 6. 강 [] 을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김 [] 을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으로, 2016. 7. 이 [] 을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각 인사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 복무점검 [] 직무감찰 업무라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 으로 하여금 위 박 [] 등 6명의 국·과장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피고인은 2015. 11.경 특별감찰반을 통해 문체부 감사담당관인 백 [] 에게 문체부 정책홍보지인 '위 [] '을 담당하고 있는 서 [] 이 [] 기 '위 [] '을 편집, 발행하고 있는 주간동아 측에 소위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전달하여 문체부 감사관실로 하여금 자체 감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문체부 감사관실이 '위 [] ' 관련 감찰을 부실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감찰반으로 하여금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사무실을 수색하고, 백 [] 을 비롯한 문체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조사하게 한 다음, 위 백 [] 이 사건 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등의 비위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문체부의 자체 감찰 및 정식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백 [] 을 감사담당관에서 물러나

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부·처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상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2. 경 윤 민정 비서관을 통해 박 문체부 제1차관에게 연락하여 '백 과장이 감사 민원 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 민원인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이 감사담당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라'라고 요구하고, 박 은 이를 김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위 박 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전해들은 김 은 백 케 대한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문체부 자체 감찰이 진행되거나 그에 기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어떠한 칭제사유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백 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개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2016. 2. 백 을 위 감사담당관 자리에서 무보직 조치를, 이어 같은 달 . 백 을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 조치함으로써 백 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 복무점검·직무감찰 업무라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으로 하여금 위 백 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케 [에 대한 부당 현장 실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케 재단과 더 설립 및 운영 경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은 박 전 대통령, 인 전 경제수석
비서관(이하 '안') 등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6. 1. 케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에 앞서 향후 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2016. 1.
.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 (이하 '더')
를 설립하였다.

한편 문체부 및 산하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생활 진흥 및 스포츠클럽 육성 등
을 위해 케 으로 선정된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해 클럽당 매년 수 억원 상
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2016년 현재 선정된 전국의 케 은 30
여개에 이르며,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 케 이 국
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하위 부실평가를 받은
클럽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여 왔다.

최 은 케 재단이 전국 케 .클럽을 관장하는 중앙지원센터 역할
을, 더 가 이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케
·럽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집행을 통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문체부에서 추
진한 전국 광역 거점 케 .클럽을 케 재단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
의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김 이나 자신의 측근 차 이 추천하여 청와대 교육
문화수석비서관이 된 김 을 통해 위와 같은 사업기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게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이 쿠 재단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포츠클럽들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켜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민정수석실의 케

클럽	감찰 경위	클럽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상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고, 문체부 및 교문수석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케	재단이 전국 케	클럽을 관장하는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더 가 이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부실클럽을 원천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교문수석실 작성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고, 민정수석실 담당 행정관은 교문수석실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케 . 재단을 케 클럽 사업에 참여시키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케' 재단의 설립경위·현황 및 2016. 2.에 있었던 케	클럽 재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	-------	--	----------	---	---

그에 따라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은 문체부 체육진흥과장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부장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전국 30개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산자료 등 케 클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 면담 및 제출 자료 검토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업에서 퇴출시킬 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스포츠클럽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전국 30여개 스포츠클럽에 대해 직접 현장실태점검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민정수석실의 부당 감찰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실 및 특별감찰반을 통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공직비리와 직무감찰을 하여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관련 비위 정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감찰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뿐, 공직자에 대한 비위 및 직무감찰을 넘어 직접 보조금 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회계까지 감사하거나民間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직접 감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아래적으로 민정비서관실 직원 외에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감찰만 할 수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K- 클럽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체육진흥과장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육성부장에게 2016. 5. 부터 2016. 5. 까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전국 28개 K- 클럽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육성부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K- 클럽 점검 보고', 'K- 클럽 전수 조사 결과개선 여부 점검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하는 등 자체 수감 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내부 보고를 하고, 현장실사 당일 민정수석실 직원

들을 안내할 대한체육회 직원들을 지정하여 출장준비를 지시하고,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당일 이용할 차량 렌트 등을 알아보며 전국 28개 케이블클럽에 현장실사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하고, 전국 28개 케이블클럽에서는 현장실태점검을 위해 수감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였다.¹⁾

이로써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겸찰고발 진술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박 전 대통령은 C 그룹이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고 소위 '좌편향' 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 하에 2014. 3. 경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영화시장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은 2014. 8. 경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C 그룹의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불공정거래로 의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피고인도 좌편향 시각으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 비판 여론에 찬동하고 있다고 낙인찍힌 C 그룹 등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 위원장 노는 그 무렵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김에게 영화산업 분야의 독과점 실태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공정위 시장감시국 산하 서비스업

1) 그 후 피고인은 2016. 7.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담당자에게 하위 부실평가를 받은 6개 스포츠클럽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중단을 요구하였다.

감시과는 2014. 4.경 다수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C 와 영화 제작·배급을 주도하고 있는 C 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위 김 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0.경 공정거래법·과징금고시·고발지침 등에 의거하여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하고, 협의 없는 할인권 발행, 일방적인 부울 변경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C'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중하므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제작사에 부당한 이자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C 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므로 시정명령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정위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공정위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심의 준비를 위해 위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인 C 그룹 측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경 '공정위 조사 결과 C'는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시정명령 외에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 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던 신 을 청와대 내 민정비서관 집무실로 불러 'C 은 실제 이익을 본 업체이므로 검찰고발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신 사무처장이 '조사결과,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C'에 대하여만 검찰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신에게 '머리를 잘 쓰면 C 을 엮을 수 있다. C 와 C'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한 어조로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신 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전해들은 노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김 국장은 이미 심사보고서가 C 측에 송부되어 검찰고발 조치를 하도록 심사보고서를 경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권 실세 비서관으로서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심사관인 김 국장이 C 측 대한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 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사관 조치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은 2014. 12. 경 개의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작성·송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C 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심사관 조치 의견' 문건을 피신인 측과 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C 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관 조치 의견을 진술하였다.²⁾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사정 관련 청탁·조정 업무라는 민정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 으로 하여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관 조치 의견' 문건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조사 결과와 공정위 업무 지침에 벗어난 의견을 진술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 [특별감찰관법위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

2)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2015. 4. 경 C 대하여 검찰고발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만을 의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공정위가 C 측에 부과한 과징금(약 32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C 는 불복하며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2.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이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C 1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대통령 소속이 되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당시 특별감찰관은 '넥 우 - 처가 땅 매입, 진 주선 의혹', '우 흥 변호사와 함께 정 대표 몰래 변론 의혹', '우 아들, 의경서 꽃보 직 의혹', '우 , 가족회사 통해 재산축소신고, 세금회피 의혹' 등 피고인의 각종 비위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던 무렵인 2016. 7. 경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병 역 보직특혜 의혹에 대해, 2016. 7. 경 피고인의 배우자 등 처가가 연루된 죄정 의 회사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각각 감찰을 개시하면서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별감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감찰 개시 시점에 각 통보받았고, 그 무렵 윤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죄정 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특별감찰관실에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에 불만을 갖고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윤 민정비서관은 2016. 7.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사이에 이 특별감찰관 및 백 특별감찰관보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감찰에 착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감찰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윤 이 이에게 전화하여 항의할 때에 윤의 옆에 있으면서 전화를 건네받아 이에게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이 특별감찰관 및 소속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2016. 7. 14:28경 (주)정 명의 임차 차량의 운행 관계, (주)정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②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소재 (주)정 사무실, ③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번길 소재 기 골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백 특별감찰관보, 치 특별감찰관실 감찰과장은 같은 날 14:00경 임 등 특별감찰관실 직원 6명을 위 3개 장소에 보내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6. 7. 14:28경부터 14: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이 및 (주)정 직원 이: 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정 사무실 등에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을 파악하는 등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연락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윤 민정비서관에게 특별감찰관실의 현장조사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윤 은 위 백 특별감찰관보와 통화하며 "우 수석님 집에 직원이 나갔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 수석님 집에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갔느냐,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갔으면 경찰의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다. 윤 의 항의를 받은 백 특별감찰관보는 같은 날 14:54경 차 특별감찰관실 감찰과장을 통해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현장 조사와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 이 의 운전기사 윤 으로 하여금 경찰청 본청 감찰 담당관실에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이 불법적인 차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권 남용여부를 조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8.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주)정 의 운영 현황, (주)정 명 의 차량 임차 및 관리 현황, 통신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8. 까지 회신 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질의서를 수령하자, 특별감찰관이 감찰권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2016. 8.

경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중 (주)정 에 대한 감찰은 (주)정 의 자금이 특별감찰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공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정 의 대표 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특별감찰관법 제5조 제2호의 감찰대상이 아니며, 위와 같이 감찰범위 및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법 제23조를 위반한 불법감찰이자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별감찰관실에 제출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6. 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 [직무유기]

가. 안과 죄 등의 비위사실 인지

안 은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 등 전 임직원, 삼
대표권 등 기업체 임원 등으로 하여금 2015. 10.경 미 출연금 명목으로
486억 원,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케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88억 원의 출연금을 각각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5. 11.경 피고인 등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안에게 '미 이 무엇이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
었고, '전 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라는 안의 답변에 대하여 '그것이
문제될 수 있다, 미 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미 재단과 케
재단 설립 당시, 죄의 요구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로 위 각 재단의 임원으
로 선임할 인물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수행하였고, 2016. 4. 하순경 미 재단 상임이
사인 이 케 대한 세평을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2016. 7. 6. 케 재단 직
원 후보자로 더 () 트레이너 출신 김 에 대한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
을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최 이 사실상 운영하는 케 재단 및 더 이가 케 클럽을 장
악함으로써 이권을 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실태점검 명목으로 전국 28개 케
클럽 및 이를 관장하는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를 준비하게 한
사실도 있었다.

그 후 T 은 2016. 7. 경 '2015. 10. 설립된 미 재단이 2개월만에 대기업들
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이는데 있어 안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고, 안 수석은 미 재단의 내부 인사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6. 8. 경 '2016. 1. 케 재단 설립시에도 청와대의 요구
로 대기업들이 추가 380억 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순차 보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안 으로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여 재단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후 2016. 9. 경 한 신문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 이 단골로 드나들
던 스 원장을 케 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최 이 재단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6. 9. 경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미 재단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안 수석이 전 을 압박하여 대기업들에게 할당된 기금
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2016. 9. 경 시민단체인 투
센터는 '안 수석이 전 에 요구해 모금한 사실, 최 이 케'

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들은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의 당사자이다, 전 회원사 기업들은 재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수하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관철해 왔다'는 취지로 안과 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16. 10. 담에서, 비선실세의 재단 관여 문제에 대하여 '비참하다'라고 말하면서 최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간의 언론보도와 비서실장의 우려 표명 및 안으로부터 전해들은 관련 사실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안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재단기금을 조성하고, 안이 재단 설립을 담당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이 장악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안 등과 진상 은폐 주도

앞서 본 민정수석의 직무범위와 같이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나 소위 대통령의 비선실세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 등에 대하여 상시 사정과 예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비위가 포착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 요인 차단과 신뢰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민정수석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6. 7. 이후 연이어진 언론보도를 통해 안 이 미 및 케 재단 모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인 으로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여 재단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아무런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안 등과 미 및 케 재단과 관련된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 이루어졌고 재단 인사권 역시 출연 기업과 그들을 대표하는 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하고, 여론의 관심을 재단 출연 경위 자체 보다 재단 자금 유용 문제로 돌려 '현재 재단 자금 유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금 횡령 등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구도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 국회 대정부 질의 대응 및 언론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6. 10. 경 피고인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응 논리를 재단 자금 유용 문제로 치환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공무원이므로, 민간인인 최 이 재단 설립 모금 등에 관여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 이 재단 자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은 없고 기업이

별도 후원하더라도 최... 이 후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경우에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 안...에게 건네주어 출연 기업, 재단 관계자 등에게도 이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6. 10.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은 '미 재단과 케... 재단은 기업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 누구라도 재단자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6. 10. 국정감사에서 인...은 '전... 이 자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어 안...의 지시를 받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김... 행정관도 2016. 10. 경 미. 재단 김... 이사장과 케... 재단 김... 이사에게 '최... 등의 재단 재산 불법 유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재단 임직원 인선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거나 답변이 곤란할 경우 기억을 못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그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안...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엄정한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한 채 오히려 그 진상을 은폐하는데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

를 유기하였다.

7. 정당한 이유 없는 국정감사 불출석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내 민정수석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의경 보직 특혜 의혹, 피고인의 가족 회사인 (주)정의 법인자금 횡령, 배임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 관여 의혹' 등에 관하여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2016. 10. 10:00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1. 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016. 10. 11. 경 위와 같이 예정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8.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해위 증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세월호 수사와 관련 피고인이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경위

세월호 사건은 2014. 4. 16. 21:00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등 총 476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45개 등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여, 같은 달 17. 07:08경 진도 VTS 관제구역 내에 진입하고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에 운항하던 중, 중·개축 공사에 의한 구조변경 및 화물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부실 고박, 조타 및 변침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선박이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었고, 09:34경 52.2도로 기

울어진 후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어 그로 인하여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위 사고로 인하여 목포지청을 주축으로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해양경찰(이하 '해경')의 직접적인 승객 퇴선 유도 지휘 소홀 등 해경의 구호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광주지검 수사팀(수사팀장 : 부장검사 윤 !)에서 수사를 개시하였다.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선박교통관계 관련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집행 담당 검사 및 수사관들은 2014. 6. 11:4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하였다.

영장 집행 담당 검사는 같은 날 14:00경 해양경찰청 9층 통신망관리실에 '해경본 청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이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전산서버 관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경측은 처음에는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해경 서버담당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영장 집 행 담당 검사는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신자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TRS 녹음자료 포함)가 저장·수록된 서버 등 전산망장비'라고 기재되어 압수수색영 장 압수할 물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서버관리자는 해경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계속하여 지연시키고 있었고, 영장 집행 담당 검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윤 부장검사는 "해경 지휘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해경측 협조 없이는 강제로 압수하지는 마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17:00경 청와대 성명불상 비서관을 통해 해양경찰청 관계자로부터 해양경찰청의 위 ‘상황실 경비전화 통신녹음’이 압수당하게 되면 ‘청와대와 해경간의 통화’ 내용이 누설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윤부장검사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윤부장검사에게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영장상 압수수색 대상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윤부장검사는 “상황실 녹음파일이 저장된 전산서버가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하고 수사상 필요하므로 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해경에서는 그 상황 실 통화내용 녹음파일 중에는 해경과 청와대가 통화한 내용까지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이를 꼭 압수해야겠는가요.”라고 말하였으나, 윤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수사상 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

윤부장검사는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서버의 경우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압수할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지만, 국가기관인 해경측에서 지휘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내용까지 압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상을 특정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검 수사팀은 같은 날 19:00경 압수할 물건을

‘해경 본청 통신망관리실 내에 있는 전화녹음시스템에 저장된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취)파일’로 특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3:00경 인천해경 본청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영장 집행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고 압수수색을 완료하였다.

나.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피고인은 2016. 12. .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 의장 245호에서 ‘박 정부의 죄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세월호 사건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피고인과 수사팀은 당시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측의 통화내역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윤 부장검사에게 전화하였을 때에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내역을 꼭 압수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단지 상황만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광주지검 수사팀은 당시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측의 통화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윤 부장검사에게 전화하였을 때에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측의 통화내역도 있는데 꼭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물어보며 사실상 압수수색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III. 첨부

1. 변호인선임서 3부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부
3. 구속영장청구서(판사기각) 2부
4. 석방지휘서 사본 2부

